

이천시읍·면·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9. 12. 29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2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2월 10일
다. 상정일자 : 제36회 이천시의회(정기회)
제2차(99. 12. 28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김영길)

가. 제안이유

- 지적공부상 구(舊관)도로(국지도 70호선)를 기준으로 백사면 신대리와 모전리가 경계를 이루고 있으나 '86년도 우회(직선)도로가 개설된 이후 기존의 경계선이 유명무실하고,
- 관할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인 신대리 일부지역(자연부락명 : 점촌)이 지적공부상 지번은 신대리이나 실제 주민등록상 주소, 행정구역 및 생활권역등 모두가 모전리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기에 이를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관할구역 백사면 신대리일원중 246-1번지, 255-1번지, 829번지등 총 74필지($62,831m^2$)를 모전리 961-1~981번지로 변경 조정함(안 제2조 별표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철호)

-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35회 임시회기중에 백사면 신대리, 모전1리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조정(경계변경)계획 설명을 들은바 있고 이에 대하여 행정구역 경계변경이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이천시장에 통보한 사항으로
- 경계 조정대상 지역인 신대리 246-1번지등 73필지 67,369m² 지역은 현재까지 모전1리도 생활권을 같이 하는 접촌 부락으로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생활권과 주민등록 실제 주소지와 일치할 수 있도록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